주택화재보험상품요약서

1. 가입자격제한 등 상품의 특이사항

가. 가입자격

- 아파트, 맨션, 연립, 빌라,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소유자 및 세입자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물건(재물)의 특성 및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등 사고발생의 위험의 크기에 따라 회사의 인수지침에 의해 보험가입 또는 가입금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나. 상품의 특이사항

1) 이 상품의 보험기간(보험회사 보상책임을 지는 기간)은 통상 1년이며, 보험료는 일시납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이 상품은 소멸성 순수보장성보험이므로 만기시 환급금이 없으며, 중도에 해지한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이 지급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해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2. 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제한사항

가. 보장의 종류 및 보험금지급사유

구분	담보(보장명)	내용(보험금지급사유)
기본계약	주택화재보험보통약관	화재(벼락포함), 폭발, 파열로 인한 재물손해
선택계약	전기위험특별약관	전기기기 또는 장치에 전기적 사고로 발생한 손해
선택계약	풍수재위험 특별약관	풍재 또는 수해로 생긴 손해
선택계약	지진위험 특별약관	지진 또는 분화로 생긴 손해
선택계약	확장위험 특별약관(Ⅰ)	폭발, 폭풍, 우박, 항공기, 차량 및 연기로 생긴 손해
선택계약	확장위험 특별약관(Ⅱ)	폭발, 폭풍, 우박, 항공기, 차량, 연기, 소요 및 노동쟁의로 생긴 손해
선택계약	붕괴, 침강 및 사태확장 특별약관	붕괴, 침강 및 사태로 인해 발생한 손해
선택계약	소요,노동쟁의,항공기 및 차량위험 특별약관	소요, 노동쟁의, 항공기 및 차량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
선택계약	도난위험 특별약관	강(절)도로 생긴 도난, 훼손 또는 망가진 손해
선택계약	급배수설비누출손해	수조, 급배수설비 또는 수관이 우연한

	특별약관	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됨에 따라 보험의 목적에 생긴 직접손해
선택계약	스프링클러누출손해 특별약관	스프링클러설비나 장치가 우연한 사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됨에 따라 보험의 목적에 생긴 직접손해
선택계약	유리손해 특별약관	보험의 목적인 건물에 부착되어 있는 판유리에 생긴 파손의 손해
선택계약	악의적인 파괴행위 특별약관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이 아닌 자의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행위로 인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
선택계약	폭음파 특별약관	폭음파에 기인하거나 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보험의 목적에 발생한 손해
선택계약	재조달가액 특별약관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생긴 때에 재조달가액을 보상
선택계약	협정보험가액 특별약관	글그림, 골동품, 원고, 설계서 등의 목적물에 대해 계약 체결시 가액을 협의하여 평가하고 그 금액을 보험기간중의 보험가액으로 함.
선택계약	가액협정 특별약관	보험의 목적을 평가하고 건물인 경우의 평가액은 보험의 목적에 전부손해가 생겼을 경우 재조달가액에 의해 정함. 보험가입금액은 약정가입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을 전액 지급함.
선택계약	특수건물 풍수재위험 특별약관	특수건물(동산 제외)의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로 인한 손해
선택계약	항공기 및 낙하물위험 특별약관	특수건물(동산 제외)의 항공기 또는 그로부터의 떨어지는 물체로 인하여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

나. 지급보험금 산정방식

1)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해당액과 같거나 이상일 때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액을 보상합니다. 그러나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을 때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2)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해당액보다 적을 때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보상합니다.

보험금 = 손해액×(보험가입금액/보험가액의 80% 해당액)
- 자기부담금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보험금에서 제외합니다.

다. 보험금 지급제한사항

1) 회사의 보장은 보험기간의 첫날 오후 4시에 시작합니다.
2)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일반조항)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
②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보험금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이나 고용인이 고의로 일으킨 손해
③ 화재, 폭발 또는 파열이 발생했을 때의 분실로 생긴 손해
④ 보험의 목적의 발효, 자연발열 또는 자연발화로 생긴 손해. 그러나 자연발열 또는 자연 발화로 연소된 다른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⑤ 화재, 폭발 또는 파열로 기인되지 아니한 수도관, 수관, 수압기 등의 파열로 생긴 손해
⑥ 발전기, 여자기(정류기 포함), 변류기, 변압기, 전압조정기, 축전기, 개폐기, 차단기,피뢰기, 배전반 및 그 밖의 전기 기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로 생긴 화재, 폭발, 파열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⑦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지진, 분화 또는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화재 및 연소 또는 그 밖의 손해
⑧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해서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⑨ 제8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照射)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에 의한 재산의 소각 및 이와 유사한 손해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 내용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약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보험료 산출기초 및 보험료 예시

가. 보험료의 구성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지급을 위한 위험보험료와 보험회사의 사업경비 등을 위한 부가보험료로 구성됩니다.

나. 보험료 산출예시

□ 보 험 기 간 : 1년

보험 목적물 : 건물 3억원, 일반가재 1천만원 (단독주택)

건 물 구 조 : 조적조 슬라브즙(내화구조)

보 장 내 용 : 화재(기본계약), 도난(선택계약)

담보명		보험가입금액
기본계약	화재(건물)	3억원
	화재(일반가재)	1천만원
선택계약	도난(일반가재)	1천만원
보 험 료		150,910원

※ 상기보험료는 요율변동 및 가입조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계약자배당에 관한 사항

무배당 상품으로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5.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가. 해약환급금의 산출기준

보험계약자가 보험기간 중 보험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이 보험의 미경과보험료를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해 드립니다.

나. 미경과보험료 산출기준

1) 보험험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해지 : 기경과기간의 단기요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보험료를 기납입보험료에서 뺀 잔액

2) 그 밖의 해지 : 미경과기간에 대하여 일할로 계산된 보험료

본 상품요약서는 상품의 중요내용만을 일부 요약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보험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